

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지정 회계법인 모집 재공고

(사)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 감사 업무를 수행할 지정 회계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9월 21일
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

1 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회계기관 모집
- ☐ **추진근거** 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12조의2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
- ☐ **대상사업** :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
 - **사업규모** : 412개 과제, 참여기관 사업비 등
 - ¹⁾ 기관 수, 정산 규모는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 - ²⁾ 정산 시,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함
- ☐ **표준수수료** : 유형별 과제금액에 기초하여 수수료를 산정
 -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(제30조⑥,⑦, <별표5>)에 근거하여 유형별 과제에 따라 수수료 산정

과제	구분	회계감사 수수료(상한)	추가과업
수행기관 유형구분	단독형(유형1)	700천원	① 모니터링 ② 현장(화상)실사 ③ 상담 및 교육 등
	협업형(유형2)	1,000천원	
	공동형(유형3)	2,000천원	

□ 신청자격

- 공인회계사법 제24조(회계법인의 등록)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

< 필수사항 >

- 소상공인 지원사업 회계정산 용역 수주 실적 보유 회계법인
 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활용 역량 보유
- 창업지원사업 회계정산용역 수주 실적 보유 회계법인

-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

< 제한사항 >

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3조(직무제한)에 위배되지 않는 법인(회계사)
- 「공인회계사법」 제39조(등록취소 등)에 해당되어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법인

* 최근 2년간 징계가 있을 시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('24.1.1. ~ '25.12.31.)

□ 모집기간 : 2026년 9월 21일(월) ~ 9월 29일(화)

- 접수마감 : 2026년 9월 29일(화), 17:00까지

< 모집 일정(안) >

공개모집	서류검토	평가	협약체결	사업수행
회계법인 공개모집	요건 및 정량검토	정량·정성 (발표)평가	선정통보 권역 매칭	매칭권역 사업비 점검
'26.9.21.~9.29.	~'26.9.30.	'26.10.1~10.2.	~'26.10.6.	'26.10.12.~

* 발표평가 일정(안) : 2026년 10월 1~2일 발표평가 예정(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접수마감 이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, 일정 변경 가능)

□ 선정규모 : 4개 내외

- 회계법인의 본점 또는 분사무소를 기준으로 신청(단,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 본점과 분사무소 중 한 곳만 택1하여 신청 가능)
- 선정평가(서류·발표) 고득점자순으로 희망권역*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에 참고자료로 안내 예정

* 희망권역은 제안요청서 내 [붙임 1] 참가신청서에 기입 필수

** 희망권역 우선 배분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쓰이며, 실제 사업 수행 여건에 따라 타 권역과 매칭될 수 있음

권역 구분(수행기관 수)			
수도권(117) (서울, 경기, 인천)	강원, 중부권(97) (강원, 충남, 충북, 대전, 세종)	대경권·동남권(119) (경북, 대구, 부산, 울산)	경남,호남권·전북·제주(108) (경남, 전남, 전북, 제주)

3 주요과업 및 운영

□ 주요과업내용

대상사업	사업내용
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(사업기간: 2026.7.~11.)	- (목적)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- (규모) 약 412개사 - (지원) 푸드, 뷰티, 패션 등 생활밀착형 제품·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'기술개발' 및 '사업화'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

- **(투입인력)** 사업관리자(PM)는 본 사업 총괄책임자로, 실무 전담팀(회계사, 사무·행정인력)을 구성하여 전담인력으로 배치

* 투입인력은 정부·지자체 보조금 정산 또는 유사용역 수행경험이 있는 자로 지정,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업무수행 및 상시점검, 정보공시가 가능해야 함

- **(사업비 모니터링 및 회계정산)**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」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
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내 업무수행 및 상시점검, 정산잔액(집행잔액, 불인정금액, 이자 등) 및 반납액 산출·검증, 정보공시

- * 불인정금액 : 규정위반, 부적격 증빙, 한도초과집행 등 불인정 건에 대하여 검증 대상으로부터 소명자료 접수·검토, 의견서 작성
- 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에 따른 소상공인의 신청서류, 증빙서류 등 의 적정성 검토
- * 서류 미비 시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서류 보완요청(안내) 및 제출 독려
-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, 관련 자료 제출 및 증빙 협조
- 보조금 집행 위반사항(불인정 집행, 사업비 편취 등) 발견 시 즉시 보고
- (현장점검) 대상사업 특성에 따라 중간·최종 점검 등 필요시 전문 인력(회계사) 현장 파견을 통한 점검 시행
- (결과보고) ①수행기관 정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보고서, ②과제별 회계검증보고서, ③중간·최종결과보고서 제출
 - * 회계법인의 착오·누락으로 인한 검증 결과 오류 발생 시, 전담·주관기관은 해당 보고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계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(기타) 담당과제 사업비 관련 문의 대응, 회계교육 등

□ 운영방안

- (협약기간) 2026년 9월 중 ~ 사업종료일
- (착수보고)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사업 수행계획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
- (결과보고) 상시점검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

구 분	내 용
회계검증보고서	- 매달 말 주관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- 과업수행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및 관련 질의응답 모음을 작성하여 제출
최종결과보고서	- 사업 완료 시 최종결과보고서 2부 제출 * USB에 원본 파일 및 각종 보고서, raw data 일체 수록하여 별도 제출 - 최종결과보고서 내 수행기관 회계검증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-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불인정 사례 등을 포함하여 제출 - 회계감사 및 정산 관련 개선사항 포함하여 제출

※ 본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주관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즉시 응하여야 함

4

제안서 제출방법

☐ 제출서류

< 제출서류 >

- ① 참가신청서(붙임 1호) 1부 및 제안서*(붙임 2호) 1부
- ② 발표자료 1부
- ③ 투입인력 증빙서류(별첨 1호), 실적증명서(기간 : '23.1.1. ~ '25.12.31. 별첨 2호) 각 1부
- ④ 협약서(붙임 3호), 보안서약서(붙임 4호)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붙임 5호) 각 1부
- ⑤ 사용인감계(붙임 6호),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
- ⑧ 회계법인의 조치사실확인원 1부(한국공인회계사회, 기간 : '24.1.1. ~ '25.12.31.)

* 제안서는 발표자료와 함께 제출(PDF파일, 제안서 30p 내외, 발표자료 15p 내외)

** 제출 후 추가 및 수정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☐ 제안서제출

- 접수방법 : 전자메일(sponmk@ccei.kr, pyj@ccei.kr 제출)
- 제출마감 : 2026년 9월 17일(목), 17:00까지

☐ 문의처

- 문의 : (사)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사무국 특화사업실(02-723-9356)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, 제안요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될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신청 회계법인의 과제 총괄책임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,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될 수 있음

□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

-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, 제안요청서 등 제출 서류 내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 될 수 있음
- 주관기관은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
- 본 과업 특성상 제안사는 주관기관 및 선정 소상공인과 긴밀한 소통과 업무 협조가 필수이며 추진 일정을 준수해야 함

참고

지정 회계법인 선정평가 기준

□ 평가방법

- 단계별(1단계 : 정량평가 → 2단계 : 정성(발표)평가) 평가를 진행하고, 정량(30%) 및 정성(70%) 점수,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

□ 평가기준

- 정량(30점) : 담당자가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정량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 후 위원별 검증
- 정성(70점) : 제안요청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

< 평가기준(안) >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(점)
제안기관 역량 (30점_정량)	• 제안기관의 경영상태	5
	• 전문인력(회계사) 보유현황	5
	• 전문인력(회계사) 해당경력	5
	• 정부지원사업의 회계감사 실적	15
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구체성 (60점_정성)	• 회계감사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
	• 회계점검(모니터링)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
	• 현장점검 방안의 타당성 및 구체성	15
	• 감사결과 검증방안 및 신뢰성 확보방안	15
서비스 제공방안 (10점_정성)	• 민원방지 대응방안	5
	• 정보유출 보안대책	5
합계		100

- 감점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	배점(점)
감점(5점)	• 최근 2년간 징계가 있을 경우('24년~'25년)	감점 5